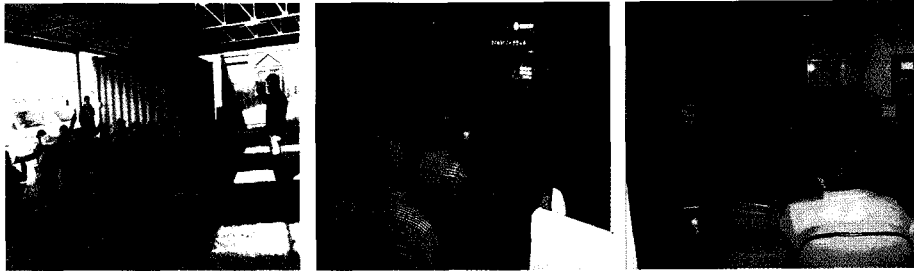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안전교육의 목적과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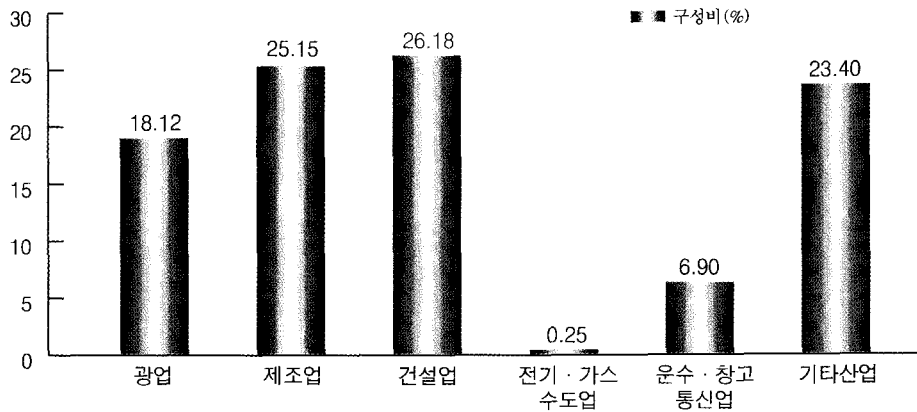
전경일 건설안전본부 재해예방팀



1.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현재의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안전보건 실태

건설업 산업재해자 약 1만 9천여명 중 89.5%가 6개월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고용특성상 대부분 소속감 및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고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작업환경의 다변화로 인해 중대 재해가 타 업종에 비해 높고, 건설업 재해발생현황 역시 전년 대비 6.10% 증가로 타 업종에 비해 유일하게 증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건설업 관련 안전관리의 효율성의 문제제기와 더불어 중대재해가 많은 건설업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현실적인 안전 교육제도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 2007 산업별 사망재해 분포도

〈표 1〉 업종별 재해자 비교표

(단위: 명)

연 도	전 산업	광 업	제 조 업	건 설 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통신업	기타산업
2006	89,910	1,869	35,914	17,955	122	5,049	29,001
2007	90,147	1,593	34,117	19,050	121	4,736	30,530
증감(%)	0.26	-14.77	-5.00	6.10	-0.82	-6.20	5.27

나.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안전교육의 필요성

현재 국내 대형 건설현장을 위주로 비교적 전문화된 현장 안전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건설안전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상황으로 안전관련 서류만 맞추면 된다는 식의 풍토가 만연되어 있다. 또 작업반장이 주축이 돼서 팀을 꾸리는 현장 근로자 역시 시간이 곧 돈이 되는 현장여건에서 근로자 안전교육은 기피하고 귀찮은 일로 치부되는 경향이 크며, 소형 공사일수록 공기가 짧고 근로자 이동이 많아 관리감독자의 의식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으로 인해 현장에서의 안전교육 등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상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한 정부에서는 산업안전선진화의 일환으로 제2차(09~13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통해 비정규직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건설 기초안전교육 이수제도(Green Card) 도입을 위한 기반조성 차원에서 본 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 건설 기초안전교육 이수제도(Green Card)

앞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한국에서 2011년 도입예정인 Green Card 제도는 이미 호주나 일본, 영국 등과 같이 선진국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안전교육제도로(표 2 참조)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면허취득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건설현장에 취업이 불가능하도록 법으로 명시하여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6개월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설 재해를 예방하고 건설근로자의 인권을 향상시키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예로 호주에서 시행되는 Blue Card를 살펴보면 각 주에서 지정한 트레이닝 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에 관하여 네 시간동안 교육을 받고 난 후 일종의 테스트를 통과 하는 자에 한해 Blue Card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유료로 운영되어 교육생이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표 2〉 각국의 건설교육 사례

국 가	명 칭	교육시간	법적의무	특 정
호 주	Blue Card	4시간	의무	주 단위 실시
영 국	Safety Pass Alliance	2일	자율	업종별 협의체 주관
싱가포르	Construction Course for Workers	8시간	의무	
일본	기능강습수료증명서	-	의무	
말레이시아	Green Card	2일	의무	

2. 우리나라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안전교육

가.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안전교육 개요

(1) 건설업 산업재해자의 대부분이 6개월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나 건설근로자의 고용 특성 등으로 대부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실시 능력을 갖춘 교육기관을 공모를 통해 수탁 교육기관으로 선정하고 교육기

관으로 하여금 비정규직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로 2009년 7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연 단위로 실시된다.

(2) 교육기관 선정

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출된 신청서 및 각종 제출자료 내용의 서류심사 실시

② 청 단위별로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위원 평가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배정된 기관을 선정

(3) 교육대상 인원

금년(2009년)은 도입단계로 연말까지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100,00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및 내년(2010) 300,000명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 1개 교육기관 당 교육인원 최대 7,000명 (1,000명 내·외/월)

〈표 3〉 청별 교육인원

구분	계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경인청	광주청	대전청
교육인원(09년)	100,000	25,000	19,000	13,000	19,000	12,000	12,000
교육기관(09년)	16	4	3	2	3	2	2

(4) 교육기관 현황

교육기관과 사업주·직업소개소·노동단체 등과 상호 교육업무 대항협약을 체결을 통하여 교육생 모집(건설업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6개 권역별로 교육기관 선정)하고 선정된 교육기관은 노동부 지방청 관할 소재지 직업소개소 및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4〉 권역별 선정된 교육기관(2009년 현재)

관할 노동청	기관명	비고
서울청(4개)	(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중앙회	
	(주) 한국안전보건기술원	
	(사)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주) 안전하는사람들	
부산청(3개)	(사) 대한산업안전협회 부산지회	
	한국건설안전기술(주)	
	(주) 한국안전기술원	
경인청(3개)	(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수원지회	
	제일건설안전기술(주)	
	한국건설재해예방(주)	
대전청(2개)	(사) 대한산업안전협회 대전지회	
	(주) 세종건설안전기술단	
광주청(2개)	(주) 유탐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사) 한국능력개발원 호남직원전문학교	
대구청(2개)	(주)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사) 경북동부경영자협회	

(5) 교육내용 및 절차

선정된 교육기관에 건설현장 취업희망자 및 교육의뢰자가 교육수강 신청 및 접수를 통해 1일 4시간 과정(공동 1시간, 교육대상 별 3시간)으로 교육이 진행되며 체계적인 건설안전 교육이수자의 이력 관리를 위해 별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생을 관리하고 있다.

〈표 5〉 교육 시간 및 과정명

구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공동 (1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30분
	안전의식제고를 위한 동영상	30분
교육대상별(3시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방법	2시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1시간

(6) 교육생 지원 사항 및 참고사항

교육을 신청한 교육생에게는 맞춤형 교재를 제공하며 교육과정 이수하면 2년간 신규채용시 교육이 면제되는 이수증이 발급되고 각 교육생에게 식비와 교통비가 현장에서 지급된다.

※ 단 교육이수자는 2년 이내에 동일 교육을 받을 수 없음(중복 교육 불가)

〈표 6〉 각 건설 공정별 맞춤형 교육교재

구분	교재내용	비고
건축공사 안전작업	건축공사 안전작업 1(대형공사 위주)	
	건축공사 안전작업 2(중소형 공사 위주)	
토목공사 안전작업	토목공사 안전작업 1(도로, 교량공사 위주)	
	토목공사 안전작업 2(기타 토목공사 위주)	
건설공사 안전작업	공통공사 위주	

3. 결론

현재 우리나라 산업재해현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안전사고 사망자수 2위(08년)로 전산업 하루 평균 재해자가 260여명, 사망자 7명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설재해 현황은 더욱 심각하여 2008년 기준 재해자가 20,835명 사망자 690명으로 매일 57명이 부상당하고 이 중 약 2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으로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건설업 산업재해를 입는 근로자의 약 90%가 6개월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들로 이들에 대한 사고예방 대책이 절실하다 판단되며, 이에 정부기관 및 관련 기업이 책임지고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로 인한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추진 중인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안전교육제도는 건설현장 투입 전에 검증받은 강사진에게 안전교육을 이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재해예방의 대책이라 사료되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로 건설업 안전문화 정착에 커다란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